

[사 건 명] 행심 2019 - 9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청구인 ◇◇◇과 피해학생 000은 ○○학교 학생이다.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9. 5.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피청구인은 2019. 5. 16.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조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나, 사건의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 나. 피해학생은 평소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을 핑계 삼아 문제를 피해갔고, 이러한 피해학생의 행동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현재 심리 치료 중에 있다.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놀아주지 않은 이유는 피해학생이 자기 위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또래 학생들이 받아주기 힘들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또한 청구인의 별명을 부르며 놀린 사실이 있다.
-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측이 준비한 관련 자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질문으로 청구인을 다그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시기가 오래되어 관련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확실성이 없다. 인성과 지성이 부족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이므로 감정 또는 신체를 해치려 한 행동으로도 볼 수 없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제3자의 진술을 통해서 2018년 2학기부터 여러 차례 피해학생에게 강한 어조로 화를 내며 말을 하고, 주변 학생에게 피해학생과 놀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학폭위에서 청구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의 노력과 반성이 다소 부족하여 총 5점이 산정되었고, 이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하는 점수이나, 청구인이 저학년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제1호 서면사과’로 경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회복적 교육차원에서 청구인에게 결코 과하지 않은 조치라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고구마, 고등어”라는 별명을 불렀다. 이를 듣고 피해학생이 울기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수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이 거짓말쟁이니까 놀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
- 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화난 어투로 말하면 피해학생은 자주 울었다.
- 라. 피해학생은 2018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청구인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2019. 4. 24. 학교폭력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원칙을 들어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아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학폭위 참석 협조 안내문을 보내면서 안내문에 이 사건 처분 원인사실과 동일한 안건 내용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상 폭력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폭력은 별개의 문제로,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다수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이 거짓말쟁이라며 피해학생과 놀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5점으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아직 저학년인 점, 충분한 선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점을 감경하여 총점 3점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조치하였다.

위와 같이 학폭위에서는 선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낮은 서면사과 조치로 감경 처분하였는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라. 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